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40
----------	------

2020.11.2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0. 10. 16. 정진술 의원 발의 (2020. 10. 26. 회부)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관료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1조(대관료) ① ----- ----- ----- ----- -----.</p> <p>④ <u>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u> 2. <u>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u> 3. <u>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u> 4. <u>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u>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를 위한 일환으로,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계약보증금 포함 선납액 전부를 반환하되, 필요시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은 총액 10%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등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20.9., 붙임1),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행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시설물 대관 규정’(이하, 전시관 대관 규정, 붙임2)을 참고하여 전시관 대관료 반환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됨.

	전시관 시설물 대관 규정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집행부 수정안
대관료 납부 기한	대관 계약일 이후 5일 이내	사용일 10일 전까지	-	사용일 5일 전까지
100%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에 의한 취소, 대관 개시일 5일 이전까지 취소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에 의한 취소, 사용일 4일 전까지 취 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에 의한 취소
일부 반환	50% 반환 : 대관 개시일 2일 이전 까지 취소	-	대관료의 100분의 10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전까지 취소	개정안과 동일
			대관료의 100분의 10 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	개정안과 동일
반환 불가	대관 개시일로부터 1일 남은 시점 이후 취소	-	-	-
비고		<p>‘이전’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법률상 기간계산 관련 용어를 사용 시 ‘0일 전’과 같은 용례가 다수이므로 조문 구성 시 이러한 용례를 따름(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p>		

- 전시관 대관 규정을 살펴보면, 취소 시점에 따라 전액 반환, 50% 반환, 반환 불가 등 차등 반환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일 이후의(이틀 이상 대관할 경우) 반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에서(제11조제1항)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대관 계약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이 조례를 개정하여 대관료 반환규정을 명시하고, 이 조례에 따라 전시관 대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부에서 대관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고 대관료 반환은 사용일 전과 사용일 후로 이원화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대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반환 구간을 간소화하여 분쟁 및 착오의 여지를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 개정에 집행부 안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전시관 시설 중 아카이브만 대관을 하고 있고, 전시관 개관 이후(19.3.) 대관료 반환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현재까지 대관 건수 : 서울시 84건, 외부 10건).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붙임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①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input type="checkbox"/> 신청서는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불공정·부패요인 제거 <input type="checkbox"/>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50% 이상,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등 필수 보장장치 마련 <input type="radio"/> 우수작품 선정 결과, 특정단체 독점 현상의 해소방안 강구 <input type="radio"/>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②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대관 혜택 제공하는 규정 폐지 및 신설 금지 <input type="checkbox"/>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③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input type="checkbox"/>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input type="radio"/>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편차 최소화 <input type="radio"/>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금지 <input type="checkbox"/> 면제 부가가치세의 사용료에 포함 징수 오류를 정비		
④ 대관비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input type="checkbox"/>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 10%이내 최소화,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input type="checkbox"/> 사용료 미반환으로 부담수익 못하도록 국·공유재산 운영기관에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전파 <input type="checkbox"/> 계약보증금 등 납부방식, 허가조건 변경 등 사용조건의 공정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⑤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시설물, 환불정책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공개		

〈붙임2〉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정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의 회계처리는 서울특별시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시설물 대관 규정('19.12.)

제3조(대관의 범위)

전시관 연도별 운영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 강연, 세미나 등의 일회성 행사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전시의 경우 전시관 내부 일정 외 잔여 일정이 있는 경우 공고 등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치	대관 가능 공간명	면적
지하 2층	서울 라이브러리	223㎡

제10조(대관료 및 감면)

① 대관료

1. 대관자는 **대관 계약일 이후 5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사용일 전 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단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3. 관할 자치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준비, 시행, 철수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 폐기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단, 대관자가 이를 실행하지 않을 시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 등을 실비로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전시관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 100%
2. 서울특별시 또는 전시관과 대관자가 공동 주최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 50%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 50%

제11조(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한다.

100%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대관 개시일 5일 이전까지 취소
50% 반환	대관 개시일 2일 이전까지 취소
반환 불가	대관 개시일로부터 1일 남은 시점 이후 취소